

〈별표7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약관에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1.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질환	I67
9.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2.0
10. 후천성 동정맥루	I77.0
11.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	Q28.0
12. 뇌전혈관의 기타기형	Q28.1
13.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Q28.2
14. 대뇌혈관의 기타기형	Q28.3
15. 두개내손상	S06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